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1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김소희·최수진·주호영

서천호 · 성일종 · 이헌승

배준영 · 서지영 · 한지아

우재준 · 정성국 · 조경태

박형수 · 고동진 · 김대식

권영세 · 장동혁 · 박성훈

서범수 · 김선교 · 서명옥

곽규택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안전교육, 안전점검 강화 등 인적 투자 확대도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한 인적 투자에 대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과로사 예방 등 다 양한 업종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투자 이외의 인 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기업 의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 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출하 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 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 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안전활동 교육훈련비
- 2.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 3. 안전인증 및 진단비용
- 4. 종업원 건강증진비용
- 5. 안전보건조직 인력 노무비
- 6. 안전점검비용
-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4조의2(산업재해예방세액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내국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u>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u>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안전활동 교육훈련비
	2. 보호구 구입 및 유지관리비
	3. 안전인증 및 진단비용
	4. 종업원 건강증진비용
	5. 안전보건조직 인력 노무비
	<u>6. 안전점검비용</u>
	7.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